

201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I. 일 시	2013. 11. 18.(월) 12:00~13:10	II. 장 소	제2학생회관 병풍홀
III. 참석자	이관행 위원장(부총장), 노도영 위원(대학장), 박철승 위원(교학처장), 허호길 위원(기획처장), 고희일 위원, 박원우 위원, 전지현 위원, 장도근 위원 / 간사: 함인석 교학팀장		

IV. 심의내용

1. 성원: 재적위원 9인 중 8인 참석으로 성원

2. 안전심의 결과

【보고안전1】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보고

▶ 보고결과: 원안 접수

【심의안전1】 2014학년도 교육경비 심의(안)

▶ 심의내용

○ 2014학년도 교육경비 심의

▶ 논의사항

○ 위원장의 개회 선언(12:00)

○ 대학원과정 과기원/일반 장학생 교육경비 심의

- 제1안(동결)과 제2안(3%인상) 상정하고 제안 설명함.
- 교육경비가 인상될 경우 인상분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질의함.
- 실제 인상분 이상으로 학생들의 후생복지비와 교육경비로 투자되고 있으며, 일부는 학사 직접경비로 편성되고 있다고 답변함.
- 제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.
- 제1안(동결) 채택에 전원 동의하여, 학기 당 3,415,000원으로 함.

○ 학사과정 교육경비 심의

- 제1안(동결)과 제2안(3%인상) 상정하고 제안 설명함.
- 대학원과정과 마찬가지로 동결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.
- 제1안(동결) 선택 시 납입금은 전액 면제되며, 기성회비 실 납부액을 재학생 1,030,000원, 2014학년도 신입생은 1,130,000원(1,030,000원+제2 학생회관 체육시설 자유이용료 100,000원)으로 고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함.
- 체육시설 자유이용은 정가(定價)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부연 설명함.
- 작년에는 2013학년도 신입생이 체육시설 자유이용료를 내고 정가(定價)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했는데 2014학년도부터 그 혜택이 없어진다면 아쉬울 것이며, 또한 2학년까지 전인교육이 필요한 기초교육학부에 소속되므로 2014학년도에 2학년이 되는 2013학번에게도 체육시설 자유이용료를 포함하여 1,130,000원을 부과할 것을 제안함.
- 제1안(동결) 채택에 전원 동의하여, 교육경비를 학기 당 3,635,000원(2013학번 및 2014학년도 신입생은 3,735,000원)으로 책정하되, 실 납부액을 재학생은 학기 당 1,030,000원(2013학번 및 2014학년도 신입생은 1,130,000원)으로 함.

○ 대학원과정 연차초과자 납입금 심의

- 「광주과학기술원 납입금 징수규정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1안(교육경비의 10%), 제2안(교육경비의 15%), 제3안(초과 연차에 따른 차등) 상정하고 제안 설명함.
- 제3안(초과 연차에 따른 차등) 채택에 전원 동의하여,
석사 3년차, 박사 5년차, 통합 7년차는 학기 당 341,000원으로 함.(대학원과정 과기원/일반 장학생 교육경비 3,415,000원의 약10%)
석사 4년차, 박사 6년차, 통합 8년차 이상은 학기 당 512,000원으로 함.(대학원과정 과기원/일반 장학생 교육경비 3,415,000원의 약15%)

○ 학사과정 연차초과자 납입금 심의

- 학사과정의 연차초과자 납입금의 경우 「광주과학기술원 납입금 징수규정」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,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하여 수강 신청한 학점에 따라 징수하기로 하되 “등록금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교육경비 총액(1안), 납

입금(2안), 실 납부액(3안) 상정하고 제안 설명함.

- 용어 사용상의 혼란 가능성이 있는 바,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명시된 등록금은 우리 원의 교육경비 책정 총액(납입금+기성회비)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함.
- 이에 1~3학점 신청자에게는 3,635,000원의 6분의 1인 605,000원, 4~6학점 신청자에게는 3분의 1인 1,211,000원, 7~9학점 신청자에게는 2분의 1인 1,817,000원, 10학점 이상 신청자에게는 교육경비 책정 총액인 3,635,000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함.
- 연차초과자는 비록 1과목(3학점)을 신청하더라도 학생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, 재학연한 내 학생의 실 납부액 1,030,000원보다 적은 605,000원을 납부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을 지적함.
-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.
- 학기 당 1~3학점 신청자는 605,000원, 4~6학점 신청자는 1,211,000원, 7~9학점 신청자는 1,817,000원,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3,635,000원으로 함.

○ 재수강(청강생) 수업료 심의

- 제1안(동결)과 제2안(약3.3%인상) 상정하고 제안 설명함.
- 제1안(동결) 채택에 전원 동의하여, 학기 당 60,000원으로 함.

○ 위원장의 폐회 선언(13:10)

▶ **심의결과: 수정 의결**

가. 대학원과정 과기원/일반 장학생 교육경비: 제1안(동결) 의결

- 학기 당 3,415,000원으로 함.

나. 학사과정 교육경비: 제1안(동결) 수정 의결

- 학기 당 3,635,000원(2013학번 및 2014학년도 신입생은 3,735,000원)으로 책정하되, 실 납부액은 학기 당 1,030,000원(2013학번 및 2014학년도 신입생은 1,130,000원)으로 함.

다. 대학원과정 연차초과자 납입금: 제3안(초과 연차에 따른 차등) 의결

- 석사 3년차, 박사 5년차, 통합 7년차는 학기 당 341,000원으로 함.(대학원과정 과기원/일반 장학생 교육경비 3,415,000원의 약10%)
- 석사 4년차, 박사 6년차, 통합 8년차 이상은 학기 당 512,000원으로 함.(대학원과정 과기원/일반 장학생 교육경비 3,415,000원의 약15%)

라. 학사과정 연차초과자 납입금: 제1안(교육경비 총액 기준으로 부과) 의결

- 학기 당 1~3학점 신청자는 605,000원, 4~6학점 신청자는 1,211,000원, 7~9학점 신청자는 1,817,000원,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3,635,000원으로 함.

마. 재수강(청강생) 수업료: 제1안(동결) 의결

- 학점 당 60,000원으로 함.

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(회의록)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,
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.

2013년 11월 18일

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관 행

(서명) 

위 원 박 철 승

(서명) 

위 원 박 원 우

(서명) 